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임원(이사) 모집 공고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및 지역축구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8월 5일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인사위원장 (직인생략)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 야	모집예정 직위(직급) 및 인원	임 기	비 고
임 원	비상임이사 : 3명	2년 (연임가능)	무보수

2. 모집직급 직무 수행 내용

제14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나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3. 모집 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 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②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
- ③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1. 미성년자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심사)

- 응시자의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나. 최종합격자 : 면접심사 후 -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다. 이사회 심의 결정 : 2025년 9월 중 예정

5. 공고 및 접수일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08.05.(화) ~ 08.20(수) 17:00 (16일간)

나. 접 수 처 :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 (☎041-576-6667)

다.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 이메일

① 방문접수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 17시 이후 접수 불가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②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우편주소 : (3113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성정동)

천안축구센터 1층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

- 겹면에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임원 공개모집 응시원서’ 표기

※ 등기우편 제출시, 제출처에 접수 확인 요망(☎041-576-6667)

③ 이메일 접수 : ccfc2002@naver.com

- 원서접수 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이메일 제출시, 제출처에 접수 확인 요망(☎041-576-6667)

6.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서식 첨부파일 참조)

② 직무수행계획서(재단 발전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1부(서식 첨부파일 참조) ※ 재단에 대한 재정적 기여도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중점 평가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재직(경력)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⑥ 성범죄(아동폭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 ⑦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⑧ 기타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추후 제출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위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편철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

7. 유의사항

가.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지원서상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서류보완은 지원서 접수 기간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에 근거하여 반환 청구시 반환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선임을 무효로 합니다.

단, 본 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제3호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으로,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반환청구시 반환되는 서류와 별개로 탈락자 서류를 포함한 채용관련 서류 사본 일체를 영구보존합니다.

라.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마. 모집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제출 서류 검증을 통해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바. 최종 임명은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 사. 기타 문의사항은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041-576-6667)으로 문의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임원(이사)	접수번호	
--------	------------------	------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E-mail		
		주 소				
		등록기준지(본적)				
		전 화	[자 택]	[직 장]		
		[휴대폰]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기재 바라며 학위가 재학, 수료, 중퇴인 자는 학위란에 표기바랍니다.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훈.포상 실적	연도	수상명	수여기관

경 력 사 항	근무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이유
					~	
					~	
					~	
					~	

지원동기 등 기타사항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지원동기, 직무 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직무수행계획서(재단 발전 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 특별한 양식 없이 귀하의 주요경력 및 업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분량 : A4용지 5매 이내)
- ※ 과거 경력의 기관에 기여한 점과 향후 축구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포함한 재단 발전계획을 함께 기술하시면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동의여부
성명, 성별, 사진, 주민등록번호	응시자 본인확인 및 최종선임시에 사용	인사자료로 영구 보존	동의/미동의
전화번호	서류적격심사, 면접합격통지 등에 활용		동의/미동의
주 소	응시자 본인확인		동의/미동의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학력, 자격증, 가족사항 등 증빙서류	서류적격심사, 면접 등 모집심사 진행 전반에 활용		동의/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모집 심사를 할 수 없어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제공

제공 대상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동의여부
천안시청 등 감사기관	감 사	응시원서	감사기간	동의/미동의
천안지원 등기계	재단 등기부등본 변경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재단 등기부등본 변경 기간	동의/미동의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모집 심사를 할 수 없어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천안시민프로축구단 이사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서명)

참 고 사 항 (근거법령)

〈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정관 〉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재단에 두는 임원의 정수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는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상임이사 포함)
3. 감사 2인

②제 1항 제 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1. 천안시장
2. 천안시 부시장
3. 천안시 체육담당국장
4. 천안도시공사 사장
5. 천안시 축구협회장
6. 천안시 체육담당과장

④감사는 천안시 체육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세무·회계 및 경영분야 전문가 중 1인을 선임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해임 방법) ①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 의결 후 취임한다.

다만, 당연직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이사장(구단주)은 천안시장으로 한다. 다만, 천안시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천안시장이 새롭게 선출될때까지 정관 12조의 직무대행자가 이사장이 될 수 있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④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사회통념상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제9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는 제6조 이사 정수의 2분의 1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임원의 결격 사유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했던 사람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임원은 당연 사직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재단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②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단의 재산현황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일

제3장 이 사 회

제13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나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이사회 의사결정은 이사장을 포함한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6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와 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재단은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과 감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필요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8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